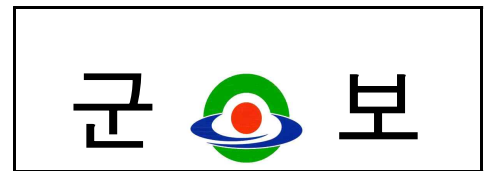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87호 2022. 8. 31.(수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2-8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

『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규정』에 의거 보호수 지정 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31일

예 천 군 수

1. 보호수지정 예정내역

지정번호	소 재 지	소유자 (관리자)	수 종	수령(년)	수고(m)	흉고직경 (cm)	본수	비고
2022-01	경북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73	권기목	느티나무	190	13	126	1	

2. 보호수 지정 사유

- 노목으로 유전적, 문화적 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.

3. 공고기간 : 2022. 08. 31 ~ 2022. 09. 20.(20일간)

4. 지정예정일 : 2022. 09. 21.(이의 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)

5. 이의신청 :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예천군청(산림녹지과)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6. 행위제한 : 산림보호법 제13조의3

-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
-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

7. 경과조치 :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 함.

[]산림보호구역 []지정
[] 보호수 []지정해제 이의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20일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고시된 보호구역/ 보호수 예정지			
면적/수종	보호구역 예정지 면적: m ²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: , 그루		
[]지정 []해제 예정고시일	. . . (제 호)		
이의신청 면적/수 종(수량)	m ² 수종(그루)		

「산림보호법」 제8조제2항,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, 제10조의2제2항·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지방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신청 이유서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 m²(재활용품)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